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합니다.
-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붙임 1, 2 참조)

※ 추후 체류자격 확대 검토 예정

② 운영 기간 및 방식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③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 계획 조정 및 확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④ 연도별 평가

- 법무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은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며, 그 외에도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개요

2. 현행 제도와 광역형 비자 비교

담당 부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장	최문정	(02-2110-4377)
	출입국 ·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02-2110-4364)

구분	세부내용				
대상 체류자격	• 유학(D-2), 특정활동(E-7)				
운영 기간·선정	• 2년 (2025 ~ 2026년)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선정 평가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점수를 취득한 지자체				
광역형 비자 요건 (공통 요건)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설계 ※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국가 전체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광역형 비자 사업별 쿼터 및 동일 국적 추천 제한 설정 •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선정 및 평가에 반영				
광역형 비자 요건 (세부 요건)	유학(D-2)		특정활동(E-7)		
	1)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할 것 2) ❶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❷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 3)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1)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2)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 요건(최저임금 이상 설정 要) ▲국민 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절차	도입 및 운영				평가 및 환류
	① 법무부 • 광역형 비자 요건 마련	② 광역지자체 • 계획 제출 ※ 추진절차, 인력, 예산, 사회통합 방안 등 포함	③ 법무부 + 심의위원회 • (법무부) 계획 검토 후 심의 위원회 상정 • (위원회) 시행 여부 등 결정	④ 법무부 + 광역지자체 • 제도 시행 - (지자체) 추천 - (법무부) 비자발급	법무부 + 심의위원회 • (법무부) 광역형 비자 성과 검토 • (위원회) 시행 지속 여부 등 결정
지자체 선정 주요 기준	(추진 필요성) 생활인구·정주인구 증가 등 광역형 비자 도입 취지와 의 합목적성 (계획의 적절성) 지역 현황 분석,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고유성·차별성 및 광역형 비자와 연계 (사회통합 계획) 사회통합정책 지원 등 계획 및 추진실적, 이주민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추진 가능성) 추진체계 구성, 안정성 및 전문성, 의지와 역량, 합리적 추진 절차 마련				
사업 평가 주요 내용	• 사업기간 중 연도별 평가(전년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 ※ 시범사업의 경우 '25년 말 평가 실시 예정이며, 필요 시 실태조사 실시 • ❶쿼터 대비 충원율(허가 기준), ❷사회통합정책 참여도, ❸이탈률(불법체류), ❹지역 내 외국인 국적별 구성 비율을 핵심으로 선정 • 핵심지표별 평가에 따라 쿼터 배분 우대 또는 삭감 기준 마련 • 연도별 평가점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운영 일정	• ('24. 12월) 광역지자체 공모 절차 시작 ※ 공모 절차 개시 후 광역지자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 ('25. 1~2월) 광역지자체 공모안 접수 • ('25. 3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 선정				

붙임 2

현행 제도와 광역형 비자 비교(광역형 비자 세부 요건)

✓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범위 내에서 기본 요건 등에 대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

□ 유학(D-2)

(신설)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現) 기본 요건
1)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할 것 2) ①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②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 3)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①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 - (수도권) 연간 2,000만 원 이상 / (지방) 연간 1,600만 원 이상 ②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원칙적으로 영리·취업활동은 제외 -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에 한정 허용 ③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따라 학교별·국가별 제출서류 및 비자심사요건 차등

□ 특정활동(E-7)

(신설)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現) 기본 요건
1)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기능인력(E-7-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2)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최저임금 이상 설정 要)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① 자격요건 : (직종+학력+경력) 요건 중 하나 충족 필요 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나.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1년 경력요건 면제,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1년 경력요건 면제 ② 국민 고용보호 :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 ③ 임금요건 : - (전문인력[E-7-1])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年 3,780만원) 이상 -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최저임금 이상